

# 안산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8-156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19. 5. .  
제 출 자 : 안 산 시 장

## □ 제안이유

- 「여성발전기본법」 및 「성별영향분석평가법」이 각각 법명 및 일부 조항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현행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의 조항을 상위 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,
- 그 밖에 일부 문구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.

## □ 주요내용

- 「여성발전기본법」을 「양성평등기본법」으로 변경(안 제1조, 2조)
- 「성별영향분석평가법」을 「성별영향평가법」으로 변경하고,  
안산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제정에 따른 조항 단순화 (안 제14조)
-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 (안 제5조~제54조)

## □ 개정조례안 : 붙임1

## □ 신·구조문대비표 : 붙임2

## □ 관계법령발췌서 : 붙임3

## □ 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사항 없음

## □ 예산수반사항 : 해당사항 없음

## □ 사전예고(결과) : 의견 있음

- 입법예고 : 2019. 5. 3. ~ 2019. 5. 13. (10일간)
- 의견제출 : 7건(반영 1건, 미반영 6건)

## □ 기타 참고사항

- 현행조례 : 붙임4
- 입법예고 결과 : 붙임5
- 방침결정문 : 붙임6

< 불임 1 >

## 안산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안산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「여성발전기본법」 을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으로 한다.

제2조 중 「여성발전기본법」 을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으로 한다.

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「여성정책기본계획을 기초하여 「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」(이하 "법 시행령"이라 한다) 제5조제3항에 따라」 를 「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을 기초하여」 로, 「시행계획(이하 "시행계획"이라 한다)」 을 「시행계획」 으로 하고, 같은 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### 6.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 제35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과의 연계방안

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**제8조의2(위원회의 존속기한)** 성평등정책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.

제14조의 제목을 “(성별영향분석평가)”에서 “(성별영향평가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시장은 「성별영향평가법」 제5조에 따라 정책을 수립·시행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여성과 남성에게 가져올 영향을 평가하여 성차별적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성평등 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.

제15조 제목 “(성별 통계의 작성)” 을 “(성인지 통계의 작성)” 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“분리” 를 “구분” 으로 한다.

제20조의 제목 “(여성주간행사)” 를 “(양성평등주간 행사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“제26조에 따른 여성주간” 을 “제23조에 따른 양성평등주간” 으로 한다.

제22조 앞에 “제2절 여성 참여의 확대” 를 삭제한다.

제22조 중 “50%” 를 “50퍼센트”로 한다.

제23조제1항 중 “여성” 을 “참여가 부진한 성” 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시장은 위원회(위원회, 심의회,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시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, 협의,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. 이하 같다)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

제24조제1항 중 “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고, 이를 통하여 여성의 상위직 진출이 확대되도록 노력” 을 “여성과 남성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” 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직장보육시설” 을 “직장어린이집” 으로 한다.

제25조제2항 중 “제5조” 를 “제3조” 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여성의” 를 “여성과 남성의” 로 한다.

제26조제1항제2호 중 “직장보육시설” 을 “직장어린이집” 으로 한다.

제27조 앞에 “제3절 여성의 인권보호 및 복지 증진” 을 삭제한다.

제27조 앞에 “제2절 여성의 인권보호 및 복지 증진” 을 신설한다.

제28조의 제목 “(여성폭력의 방지 등)” 을 “(성희롱·성폭력 등 범죄의 예방)” 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“성폭력·가정폭력·성매매(이하 “여성폭력” 이라 한다)” 를 “성희롱·성폭력·가정폭력·성매매 범죄” 로, “마련하여야 하고 여성폭력” 을 “마련하고” 로, “위하여 예방교육” 을 “위한 교육” 으로 한다.

제29조의 제목을 “(모성 보호의 강화)” 을 “(모·부성 보호의 강화)” 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모든 여성의 임신·출산 및 수유기간 동안에 특별히 보호되도록 노력하고,” 를 “임신·출산·수유·육아에 관한 모·부성권을 보장하고,” 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직장보육시설” 을 “직장어린이집” 으로 한다.

제3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**제33조(단체 등의 지원)** 시장은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 소재 비영리 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예산이나 성평등기금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35조제1항 중 “촉진을” 을 “확대를” 로 한다.

제36조제1항제2호 중 “여성단체사업” 을 “법 제51조에 따른 단체사업” 로 한다.

제4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의 회기내에 심의·의결을 받아야 한다.

제43조제1항 중 “「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을”을 “「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관계법령 및 「안산시 재무회계규칙」”을 “관계법령”으로 한다.

제46조 중 “여성주간”을 “양성평등주간”으로 한다.

제4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 수상후보자 추천은 시장·구청장·동장 또는 각급 기관·단체장이 한다.

제50조 중 “성차별·성폭력·가정폭력”을 “성희롱·성폭력·가정폭력”으로 한다.

제54조 중 “이 조례에 따른 성평등정책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등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”를 “시장은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”으로, “범위 안”을 “범위”로, “정하는”을 “규정하는”으로, “수당 등을”을 “수당과 여비를”로 한다.

#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 실과		여성가족과
입 안 자	실과장 직위·성명	여성가족과장 김 제 교
	담당·팀장 직위·성명	여성정책팀장 김 민 정
	담당자 성명·전화	김 민 정 (행정 2213)

< 불임 2 >

##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b>제1조(목적)</b> 이 조례는 「여성발전기본법」 및 그 밖의 여성관련 법령에 따라 안산시의 성평등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·경제·사회·문화의 모든 영역에 성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권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<b>제1조(목적)</b> ----- 「양성평등기본법」 -----</p>
<p><b>제2조(시의 책무)</b> 안산시(이하 "시"라 한다)는 성평등 실현을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, 「여성발전기본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및 그 밖의 여성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.</p>	<p><b>제2조(시의 책무)</b> -----</p> <p>----- 「양성평등기본법」 -----</p>
<p><b>제5조(성평등정책의 시행계획 수립)</b>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른 <u>여성정책기본계획을 기초하여 「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」</u>(이하 "법 시행령"이라 한다) 제5조제3항에 따라 연도별 성평등정책 <u>시행계획</u>(이하 "시행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되,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~ 5. (생략)</li> <li>6.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15조의3에 따른 지역사회복지계획과의 연계방안</li> <li>7. (생략)</li> </ol>	<p><b>제5조(성평등정책의 시행계획 수립)</b> -----</p> <p>----- <u>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을 기초하여 ----- 시행계획</u> -----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~ 5. (현행과 같음)</li> <li>6.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 제36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과의 연계방안</li> <li>7. (현행과 같음)</li> </ol>

현 행	개 정 안
<u>제8조의2 &lt;신 설&gt;</u>	<u>제8조의2(위원회의 존속기한) 성평등정책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.</u>
<u>제14조(성별영향분석평가)</u> ① 시장은 「성별영향분석평가법」 제5조에 따라 정책을 수립·시행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여성과 남성에게 가져올 영향을 분석 평가하여 성차별적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성평등 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.	<u>제14조(성별영향평가)</u> 시장은 「성별영향평가법」 제5조에 따라 정책을 수립·시행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여성과 남성에게 가져올 영향을 평가하여 성차별적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성평등 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.
② 제1항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함에 있어 「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령」 제2조,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정책의 선정, 분석평가의 시기, 분석평가서의 작성 및 분석평가결과의 제출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.	
③ 시장은 「성별영향분석평가법」 제9조에 따라 분석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 개선하고, 매년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	
④ 시장은 「성별영향분석평가법」 제14조에 따라 성평등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이상 공무원 1명을 분석평가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.	
⑤ 시장은 성별영향분석평가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한 분석평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	

현 행	개 정 안
<p><b>제15조(성별 통계의 작성)</b> 시장은 시와 산하 기관에서 인적통계를 작성할 때에는 성별을 <u>분리</u>하여 작성하고 각종 사업계획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/p>	<p><b>제15조(성인지 통계의 작성)</b> -----</p> <p>-----</p> <p><u>구분</u> -----</p> <p>-----.</p>
<p><b>제20조(여성주간행사)</b> 시장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여성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행사를 개최하거나 행사 주관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.</p>	<p><b>제20조(양성평등주간 행사)</b> -----</p> <p>-----</p> <p><b>제23조에 따른 양성평등주간</b>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
<p><u>제2절 여성 참여의 확대</u></p>	<p><u>&lt;삭 제&gt;</u></p>
<p><b>제22조(적극적 조치)</b> 시장 및 투자기관(지방 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기업으로서 시가 자본금의 <u>50%</u> 이상을 출자한 공기업을 말 한다)의 장은 어느 한쪽 성(性)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참여를 촉진하고 실질적인 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에서 적극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.</p>	<p><b>제22조(적극적 조치)</b>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 <u>50퍼센트</u>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
<p><b>제23조(시정참여 확대)</b> ① 시장은 주요 정책 수립·결정 과정에 성 평등적 시각이 반영되고 <u>여성</u>의 대표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시장은 시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·운영 하는 경우에 위촉직 위원 정수의 100분의 40 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/p>	<p><b>제23조(시정참여 확대)</b> ①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 <u>참여가 부진한 성</u> -----</p> <p>-----.</p> <p>② <u>시장은 각종 위원회((위원회, 심의회,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소관부서의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, 협의,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하여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체 기관을 말한다. 이하 같다)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</u></p>

현 행	개 정 안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
<p><b>제24조(공직 등의 참여촉진)</b>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·승진·포상·교육훈련 등에서 <u>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고, 이를 통하여 여성의 상위직 진출이 확대되도록 노력</u>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시장은 성평등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소속 공무원이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조화시킬 수 있도록 육아휴직제 및 <u>직장보육시설운영</u> 등의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.</p>	<p><b>제24조(공직 등의 참여촉진)</b> ① -----</p> <p>----- <u>여성과 남성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</u>-----.</p> <p>②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 <u>직장어린이집</u>-----.</p>
<p><b>제25조(경제활동 참여촉진)</b> ① (생 략)</p> <p>② 시장은 「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」 <u>제5조</u>에 따른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재취업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</p> <p>③ 시장은 경제활동에 <u>여성의</u> 동등한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고용전반에 걸쳐 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.</p>	<p><b>제25조(경제활동 참여촉진)</b>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</p> <p>----- <u>제3조</u>-----.</p> <p>③ ----- <u>여성과 남성의</u>-----.</p>
<p><b>제26조(일·가정 양립 지원)</b> (생 략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(생 략)</li> <li>2. <u>직장보육시설</u>의 확충 노력</li> <li>3. (생 략)</li> <li>4. (생 략)</li> <li>5. ~ 8. (생 략)</li> </ol> <p><u>제3절 여성의 인권보호 및 복지 증진</u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<b>제26조(일·가정 양립 지원)</b> (현행과 같음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(현행과 같음)</li> <li>2. <u>직장어린이집</u>-----</li> <li>3. (현행과 같음)</li> <li>4. (현행과 같음)</li> <li>5. ~ 8. (현행과 같음)</li> </ol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&lt;삭 제&gt;</u></p> <p><u>제2절 여성의 인권보호 및 복지 증진</u></p>

현 행	개 정 안
<p><b>제28조(여성폭력의 방지 등)</b> 시장은 성폭력·가정폭력·성매매(이하 "여성폭력"이라 한다)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·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여성폭력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</p> <p><b>제29조(모성 보호의 강화)</b> ① 시장은 모든 여성이 임신·출산 및 수유기간 동안에 특별히 보호되도록 노력하고,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          ② ----- 직장보육시설 -----.</p>	<p><b>제28조(성희롱·성폭력 등 범죄의 예방)</b> 시장은 성희롱·성폭력·가정폭력·성매매 범죄-----          -- 마련하고 ----- 위한 교육-----.</p> <p><b>제29조(모부성 보호의 강화)</b> ① --- 임신·출산·수유·육아에 관한 모·부성권을 보장하고, -----.          ② ----- 직장어린이집-----.</p>
<p><b>제33조(단체 등의 지원)</b> 시장은 여성의 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(법 제3조제2호 및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)에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, 예산 또는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의 범위에서 그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</p>	<p><b>제33조(단체 등의 지원)</b> 시장은 여성의 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 소재 비영리 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예산이나 성평등기금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경비의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.</p>
<p><b>제35조(기금의 설치 등)</b> ① 시장은 성평등 정책추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촉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안산시성평등기금(이하 "기금"이라 한다)을 설치·운영한다.          ② · ③ (생 략)</p> <p><b>제36조(기금의 용도)</b> ① (생 략)          1. (생 략)          2. 성평등 촉진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여성단체사업          3. ~ 5. (생 략)          ② (생 략)</p>	<p><b>제35조(기금의 설치 등)</b> ① ----- 확대를 -----.          -----.          ② ·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<b>제36조(기금의 용도)</b> ① (현행과 같음)          1. (현행과 같음)          2. -----          법 제51조에 따른 단체사업          3. ~ 5. (현행과 같음)          ② (현행과 같음)</p>

현 행	개 정 안
<p><b>제41조(결산 및 보고)</b> ① (생 략)</p> <p>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</p>	<p><b>제41조(결산 및 보고)</b>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의 회기내에 심의·의결을 받아야 한다.</p>
<p><b>제43조(관계규정의 준용)</b> ① 기금을 지원하거나 중지 또는 회수할 때에는 「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을 준용한다.</p> <p>② 기금의 운용 및 회계관리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및 「안산시 재무회계규칙」을 준용한다.</p>	<p><b>제43조(관계규정의 준용)</b> ① -----</p> <p>----- 「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를 -----.</p> <p>② ----- 관계법령 -----.</p>
<p><b>제46조(시상시기)</b> 여성상은 매년 여성주간에 수여한다. 다만,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시기를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</p>	<p><b>제46조(시상시기)</b> ----- 양성평등주간-----.</p>
<p><b>제48조(수상후보자의 추천)</b> ① 수상후보자는 「안산시 포상 조례」에 의한 추천권자 또는 각급기관·단체장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추천한다.</p> <p>② (생 략)</p>	<p><b>제48조(수상후보자의 추천)</b> ① 수상후보자 추천은 시장·구청장·동장 또는 각급 기관·단체장이 한다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<p><b>제50조(설치)</b> 시장은 성차별·성폭력·가정폭력 등의 피해자를 상담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안산시 성차별상담센터(이하 “상담센터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</p>	<p><b>제50조(설치)</b> ----- 성희롱·성폭력·가정폭력 -----.</p>
<p><b>제54조(수당 등)</b> 이 조례에 따른 성평등정책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등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「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.</p>	<p><b>제54조(수당 등)</b> 시장은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----- 범위에서 ----- 규정하는 ----- 수당과 여비를 -----.</p>